

1. 개정 이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

운행기록에 대한 주기적 제출 의무화 대상 대형화물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새로운 자동차 유형에 대한 신속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운행기록자료 배열순서 개선, 운행기록 장착면제 차량명의 용어 불일치를 개선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주기 단축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로부터 매 5년 실시하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매 3년으로 단축(안 제5조제1항 개정)

나.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4조 개정 및 안 제24조의2 신설)

라.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명에 대한 법정 용어 통일(안 제29조의4 제2호 개정)

마.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의무화 화물자동차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범위 구체화(안 제29조의5 신설)

바. 운행기록자료의 배열순서 개선(안 별표5 개정)

사.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통행정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교통안전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교육방법을 구체화 함.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이수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전부를 면제하도록 정의(안 31조의8 신설)

아.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을 구체화(안 별표9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에 활용되는 화물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24조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은”을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각각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운영 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29조의4제2호 중 “구난형·특수작업형”을 “구난형·특수용도형”으로 한다.

제29조의5 및 제31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운행기록장치 주기적 제출 차량) 영 제4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

제31조의8(교통안전 전문교육 종류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 ② 법 제56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 종류·대상은 별표9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

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의3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방법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의 자동차 유형의 표기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별표 5에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백업 수집 주기 내)”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 (백업 수집 주기 내)	2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실시간
-------------------------------	---	----------------	-----

별표 5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 유형과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 정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등(제31조의8제2항 관련)

1. 공무원 전문교육

구 분	교 육 대 상 자	교 육 시 간
1) 국토교통부	가) 교통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 직원 나) 영 제4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받은 부서의 전 직원	21시간 이상
2)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1시간 이상
3) 기타	그 밖에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1시간 이상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전문교육

구 분	교 육 대 상 자	교 육 시 간
교통시설설치·관리자	1)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유료도로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나)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14시간 이상

3. 운행제한단속원 전문교육

구 분	교 육 대 상 자	교 육 시 간
운행제한단속원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14시간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 ①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생략)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 ① ----- ----- ----- ----- ----- 3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 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에 활용되는 화물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u>한국교통안전공단</u> 이 시행하는 교통법규·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교육 및 훈련 과정) ① ----- ----- ----- ----- <u>국토교통부장관</u>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u>교육기관</u> (이하 ‘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u> ’이라 한다)----- ----- -----.	여야 한다.	<u>육기관</u> --.
② <u>한국교통안전공단</u> 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를 일간신문 또는 <u>한국교통안전공단</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u> 은 ----- ----- ----- ----- -----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u>한국교통안전공단</u> 에 제출하	③ ----- ----- ----- ----- ----- ----- --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u>	⑤ <u>한국교통안전공단</u> 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⑤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u> ----- ----- ----- -----.
		⑥ <u>한국교통안전공단</u> 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u> ----- -----.
		⑦ <u>한국교통안전공단</u> 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⑦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u> ----- ----- -----.
		⑧ <u>한국교통안전공단</u> 은 제6항	⑧ <u>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u>

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
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
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
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
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
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
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
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
전공단이 정한다.

<신 설>

육기관-----

-----.

⑨ -----

-----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
-----.

제24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
한 교육기관) 시험의 일부 면제
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
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
자 연수기관
3.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운영 실적 등이 있는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
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
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생 략)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
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
업형 특수자동차

3. (생 략)

<신 설>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
제 차량) -----

-----.

1. (현행과 같음)
2. -----

----- 구난형·특수용
도형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운행기록장치 주기적
제출 차량) 영 제4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
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
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 화물자동
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
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

<신 설>

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

제31조의8(교통안전 전문교육 종류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56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 종류·대상은 별표9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의3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방법 및 그 밖에 교

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